

계약예규 개정 · 시행

"현금으로 공사대금 받고도,
하도급업체에게 어음 지급 관행 뿌리뽑자"



기획재정부는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현금지급 의무화,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,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(www.kmcca.or.kr)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[편집자 주]

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

■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현금지급 의무화

- 계약상대방(원도급자)이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,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계약예규에 부재
-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
 - [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] 개정

개정전	개정후
제36조(선금의 사용) ①~④<생략> <신설>	제36조(선금의 사용) ①~④<현행과 같음>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■ 하도급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

- PQ·적격심사 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로서 감점기준 및 절차가 불명확하여 이를 구체화할 필요
-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방에게 증빙서류 제출 의무 부과
 - 하수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 수정·삭제시 신인도 감점대상에 포함
 - 발주기관은 입찰자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 미사용으로 2회이상 감점시 자체기준의 2배 범위내에서 감점가능
 -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개정

개정전	개정후
제53조(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)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<신설> 「적격심사기준」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.	제53조(적격·PQ심사관련사항 이행) ①<삭제> _____ 「입찰참가자격사 전심사요령」 및 _____
② <생략>	②<현행과 같음>
<신설>	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「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」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<신설>	④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·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<신설>	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,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,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(계약금액 기준)을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— 「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」 개정

개정전	개정후
<p>제9조(심사결과의 통보)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한 표준계약서 사용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, 부여한 가점,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(계약금액 기준)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[별표2]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(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)</p> <p>표 <생략></p> <p>주5)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.~4. <생략></p> <p>5.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함.</p>	<p>제9조(심사결과의 통보) ③<삭제> (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제5항으로 이동)</p> <p>[별표2]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(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)</p> <p>표 <현행과 같음></p> <p>주5)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.~4. <생략></p> <p>5. _____ _____ _____ _____</p> <p>— 하며,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.</p>



■ **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도 도입**

- 발주기관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,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확인
 - 정부부처 합동 「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(11.8)」 내용 반영
 - 「**공사계약일반조건**」 개정

개정전	개정후
<p>〈신설〉</p>	<p>제43조의3(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)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(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,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)의 노무비 청구내역(근로자 개인별 성명, 임금 및 연락처 등)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(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)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,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(하수급인 포함)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(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)을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(지)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

- 「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」 개정

개정전	개정후
<p>제36조(선금의 사용)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,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할 수 없으며, 노임지급〈신설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6조(선금의 사용)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(공사계약은 제외) _____.</p>

■ **시행일자 : 2012. 1. 1.**